

향후 日本의 石油備蓄政策방향

- 대한석유회사 기획부 -

이 자료는 日本 「總合에너지調査會 石油部會 石油備蓄小委員會」와 「石油審議會 石油部會 石油備蓄問題小委員會」가 공동으로 조사, 지난 11월 13일 발표한 내용을 번역한 것이다.(편집자 주)

I. 基本認識

1. 日本의 석유공급

石油은 산업활동과 국민생활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이며, 鑛工業, 電力등의 산업부문에 항공기, 선박, 자동차등 輸送部門, 가정 및 상업용등 民生部門에 걸쳐 그 용도는 매우 광범위하여 日本경제의 根幹을 지탱해 주는 필요불가결한 에너지資源이다.

日本은 현재도 총1차에너지 공급의 약 60%를 石油에 의존하고 있으며, 향후의 전망에 대해서도 지난 10월에 策定된 總合에너지調査會의 「長期에너지需給展望」에서 日本의 에너지공급에서 차지하는 석유의존도는 향후 漸減하겠지만, 日本의 에너지공급구조에서 장래에도 계속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에너지임에도 불구하고, 日本은 국내에 石油資源을 갖고 있지 못해, 거의 全量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美國은 國內에 油田을 갖고 있는 외에 南北아

메리카大陸으로부터 石油의 조달이 가능하고, 유럽은 그 域內에 北海油田을 갖고 있는데 비해, 日本은 석유공급이라는 점에서도 地政學的으로 보아 極東에 고립된 상태이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특히 後述하는 바와 같은 페르시아灣경우의 原油에 대한 의존도에서는 日本이 56%로, 프랑스의 30%, 美國과 西獨의 15%와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준에 있다. 또한 國內의 총에너지소비에서 차지하는 페르시아灣經由의 原油에 대한 의존도에서 보아도 美國은 1%, 西獨은 2%, 프랑스는 8%에 불과하지만, 日本은 27%로 先進國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있어, 日本의 석유공급기반은 현저하게 취약하다. 따라서 석유공급의 안정을 확보하는 것은 日本에 있어서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다.

2. 世界적인 石油供給構造

石油은 日本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세계전체에 있어서도 戰略的 的의를 갖는 에너지資源이다. 즉 세계전체에서 보아도 1차에너지供給의 약 40%를 현재에도 石油에 의존하고 있으며, 필수불가결한 에너지源이라는 점외에, 그 수급·가격동향은 환율의 동향, 各國經濟, 나아가서는 세계경제의 동향에 다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供給構造面에서는 자유세계 전체의 확인

석유매장량의 60% 이상이 中東지역에 부존하고 있어 지역적으로 매우 편중되어 있다. 이 地域은 그 전략적 중요성에서 國際政治上 이해대립의 쟁점이 되어 온 외에, 民族上, 宗教上 혹은 정치상의 문제때문에 지금까지 軍事的 충돌을 종종 불러 일으켰다.

최근 페르시아灣정세는 거둬되는 탱커들에 대한 공격, 나아가서는 이러한 가운데 美國이 지난 10월말 이란으로부터의 輸入을 석유도 포함시켜 전면금지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등 緊迫感이 고조되어 同地域으로부터의 석유안정공급에 불안을 느끼게 하고 있다. 석유의 공급구조는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현저히 취약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石油供給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세계경제가 상호 聯關性을 두터히 하는 가운데 국제적으로도 협조하여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과제라고 생각된다.

3. 향후의 國際石油情勢

향후의 中長期的인 국제석유수급동향을 전망하면, 전세계의 석유매장량 가운데 OPEC諸國이 약70%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非OPEC지역의 생산능력이 향후 절정에 달할 것이라는 점등을 감안하면, 석유공급의 OPEC 특히 中東의존도가 다시 높아진다는 것은 必至의 情勢이다. 이 때문에 1990년대에는 석유공급이 不安定化할 우려가 많다고 생각된다.

한편 석유수요는 開發途上國의 수요를 중심으로 착실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석유수급의 逼迫化가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86년의 석유가격하락은 省에너지, 代替에너지의 開發停滯, 석유탐사개발노력의 감퇴를 통하여 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美國에너지省이 87년 3월에 작성한 보고서가운데 「美國의 석유수입이 1990년부터 1995년 사이에 총소비량의 5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따라 中東에서 전쟁이나 OPEC諸國의 공동행위가 석유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일 위험이 있다」는 지적과 같으며, 또한 87년 5월에 개최된 IEA關係理事會에서도 가맹국간에 인식의 일치를 본 바 있다.

4. 日本 및 諸外國의 비축현황

(1) IEA에 의한 석유비축의 추진

석유비축의 필요성은 국제적으로도 일찍부터 인식되어

왔으나, OECD(經濟協力開發機構)는 1962년에 최저비축수준 60일분의 확보를, 1972년에는 同水準의 90일분으로의 확대를 각가맹국에 권고하여 석유비축의 촉진을 도모하여 왔다.

이러한 가운데 제1차석유위기를 계기로 先進國間에서 에너지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이 불가결하다는 인식이 높아져, 1974년 國際에너지計劃에 관한 協定(IEP協定)이 체결되고, 그 實施機關으로써 OECD에 IEA가 설치되었다. IEA는 참가국의 비축수준을 1980년초까지는 90일로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이밖에 석유공급이 부족한 경우에 각국이 비축의 방출등을 통하여 상호융통함으로써 부족분을 보충하는 시스템(緊急融通制度)을 확립하는 등 각종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국에서도 이를 근거로 석유비축의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2) 日本의 비축경위와 현황

日本에서도 앞에서 설명한 에너지공급구조의 취약성에 근거하여 종전부터 經濟安全保障上的의 중요시책으로써 석유비축을 추진하여 왔다. 즉 1967년 6월의 제3차 中東戰爭을 계기로 석유비축에 대한 認識이 높아지기 시작하여, 1968년도부터 民間石油會社에 의한 비축확대를 도모하였으며, 1974년도말에는 60일비축이 달성되었다. 또한 제1차 석유위기를 통하여 비축확대의 필요성을 통감하였기 때문에 1975년 12월의 石油備蓄法の 制定에 따라 석유정제업자들은 석유의 비축을 법률상 의무로 부과하게 되었다. 이 결과 1980년도말에는 90일비축이 달성되어 이후 90일의 비축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日本의 에너지공급구조 및 歐美諸國의 비축수준등을 고려한 경우, 90일비축수준 및 民間備蓄만의 체제로는 불충분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이 때문에 1978년도부터 民間備蓄과 아울러 石油公園에 의한 國家備蓄을 개시하였다. 이 國家備蓄制度는 1988년도말까지 3,000만kl의 原油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후 착실히 비축의 확대를 추진함과 아울러 국가비축기지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國家備蓄량은 1986년도말까지 약 2,400만kl에 달하고 있으며, 87년도중에 약 2,700kl에 달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비축기지건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10개지역의 立地決定을 한바 있으며, 이 가운데 陸奥는 85년 8월, 福井은 86년 7월에 완공되었고 나머지 8개지

역에서도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8개지역중 苫小牧東部는 84년 8월 일부 완공).

(3) 최근의 國際動向

석유비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종전부터 IEA關係理事會, 선진국首腦會議 등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최근 비축의 실태, 활용방법에 관한 問題意識이 높아지고 있다. 즉 첫째로 긴급시 對應能力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操業에 필요한 재고를 제외한 긴급시에 실제로 방출할 수 있는 備蓄(accessible stock)의 확대를 중심으로 總備蓄量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로 民間이 보유하는 비축이 긴급시에 효과적으로 방출될 수 있는지 의문이고 긴급시에 정부의 규제가 가능한 備蓄이 되어야 하며, 셋째로 긴급시에는 조속히 대량의 備蓄을 방출함으로써 原油市況의 급등을 방지, 사회불안의 발생을 억제한다는 관점에서 특히 초기단계에 備蓄放出이 효과적이라는 데 대한 認識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主要國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극적인 對應을 하고 있다.

美國에서는 民間에 대한 비축의무는 없고, 정부에 의한 戰略石油備蓄(SPR)이 7억5천만배럴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5억3천만배럴에 달하고 있다. 또한 비축의 早期協調的 放出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편 유럽각국은 기본적으로 민간비축에 의해 90일비축을 실시하여 왔으나, 최근 주요국에서는 國家備蓄을 병행하거나, 공급기관등에 의한 民間備蓄의 일부代替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西獨에서는 國家備蓄을 병행함과 아울러 석유회사로부터 分担金을 징수하여 備蓄協會에 의한 代替도 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 와서는 備蓄協會에 의한 代替分을 확대함과 동시에 總備蓄量을 증가시키는 절차를 밟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에서는 종래의 잠정적인 機關이었던 備蓄協會를 정부의 관리하에 두고 석유제품에 관계되는 稅收로 운영되는 항구적인 機關으로 합과 동시에 그 보유량을 증가시켜, 早期協調的 放出등에 대처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도 共同備蓄會社에 의한 민간비축의 일부 代替도 하고 있다.

II. 石油備蓄政策의 기본방향

1. 石油備蓄의 의의

(1) 國內석유안정공급의 확보

석유의 공급기반이 취약한 日本에 있어서 量的인 안정공급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수적인 課題이다.

이를 위해 日本에서는 종전부터 UN등을 통한 中東地域의 안정을 위한 외교노력의외에 產油國·消費國간의 대화, 경제협력등을 통한 產油國과의 관계긴밀화에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權利原油의 확보, 供給源의 다양화등을 도모할 石油自主開發의 추진에 노력을 경주하여 왔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석유공급장해의 규모 또는 發生形態여하에 따라서는 이들 措置만으로는 충분한 공급량이 확보될 수 없다고 판단되고, 이 때문에 事態여하에 불구하고 일정량의 석유를 항상 國內에 확보해 두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고 중요한 措置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실제의 緊急時에는 수급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省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수요억제, 또는 석유대체연료의 사용확대등 需給兩面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나, 이들의 對應만으로는 단기적으로 대폭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문제로서는 석유비축이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2) 國際石油市場의 안정화

석유비축은 긴급시에 방출함에 따라 최후의 방책으로서 기능을 할 뿐만아니라, 비축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準石油危機 또는 석유공급의 불안정화가 우려되는 상황하에서 市場의 혼란을 심리적으로 진정화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최근 페르시아灣정세가 緊迫의 度를 더해가는 데도 불구하고 주요석유소비국에서 각각 IEP協定の 준수 등에 따라 석유비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것을 배경으로 국제석유시장이 비교적 冷靜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명백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緊急時의 초기단계에서 특히 국제적인 協調下에서 기동적인 비축의 방출이 이루어지는 것은 過熱된 市場을 冷却化하는 효과를 갖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에 따라 위기적 상황을 회피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제2차石油危機당시의 日本의 原油조달행위가 국제석유시장의 혼란을 야기했다는 국제적인 비판

을 받은 것은 기억에 새로운 바이지만, 비축의 조기방출이 이러한 사태를 회피하는데에 매우 효과적이다.

(3) 大石油消費國으로서의 국제적 책임

석유는 국제적 상품이며, 그 수급동향 市場條件은 세계경제전반에 폭넓은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資源이다. 따라서 공급의 안정을 期하는 것은 日本만으로서의 문제가 아니고 전세계적인 관점에서 취급해야할 과제이다.

특히 최근 국제석유수급의 안정화에 있어서 중전부터 IEA를 통한 소비국간의 石油融通외에 위기의 초기단계에서 비축의 早期協調의 방출을 하고 있는 것은 세계의 석유시장안정화에 연결된다는 認識이 국제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더우기 日本이 국제사회의 안정에 공헌해야 하는 것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현재 美國, 소련에 이어 세계 제3위의 석유수입국인 日本이 적극적으로 효과적으로 석유비축의 확대를 도모하는 것은 日本의 國益에 연결될 뿐만 아니라 大石油消費國으로서 국제적인 책임을 수행한다는 데에도 공헌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2. 石油備蓄의 量的擴大 필요성

향후의 국제석유수급에 대하여 1990년대에는 對OPEC 의존도가 상승하여, OPEC의 市場支配力이 높아지고 석유공급의 불안정화와 석유수급의 逼迫化가 진전될 것이라는 견해는 거의 세계적으로도 일반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전망하에서 석유비축의 量的擴大 필요성의 인식이 국제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87년 5월의 IEA閣僚理事會에서도 의견의 일치를 본 바있다.

또한 각국에서도, 예를 들면 美國에서는 87년 3월의 에너지省 리포트에 근거하여 戰略石油備蓄(SPR)의 확대에 착수 한바 있으며, 또 西獨, 네덜란드에서도 備蓄量的 확대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한편 日本은 주요석유소비국중에서도 가장 석유공급의 수입의존도, 中東의존도가 높고 석유공급기반이 취약한 나라이며, 지금까지도 비축의 확대에 노력해온 결과 87년 9월말현재 약7천4백만kl(제품기준 : 약4억7천만배럴), 국내소비량기준으로 140일정도의 비축을 보유하기에 이르렀으나, 이 水準은 여전히 IEA가맹국의 평균保有日數(162일, 純輸入量베이스, 87년 7월 1일현재)를 하회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석유비축은

국내석유안정공급의 확보, 국제석유시장의 안정화등의 意義를 갖고 있는 것이며, 아울러 향후의 국제수급동향, 日本의 국제적인 비축수준의 현황, 나아가서는 日本보다 이미 높은 비축수준에 있는 美國, 西獨등에서도 더욱 확대추세에 있다는 점등을 감안한다면 日本으로서도 석유비축의 量的擴大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3. 石油備蓄의 質的充實의 필요성 (國家備蓄의 增強)

석유비축의 확충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 質的인 充實을 도모하도록 하여, 향후 국가비축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1) 石油政策의 기본방향과 합치하는 석유비축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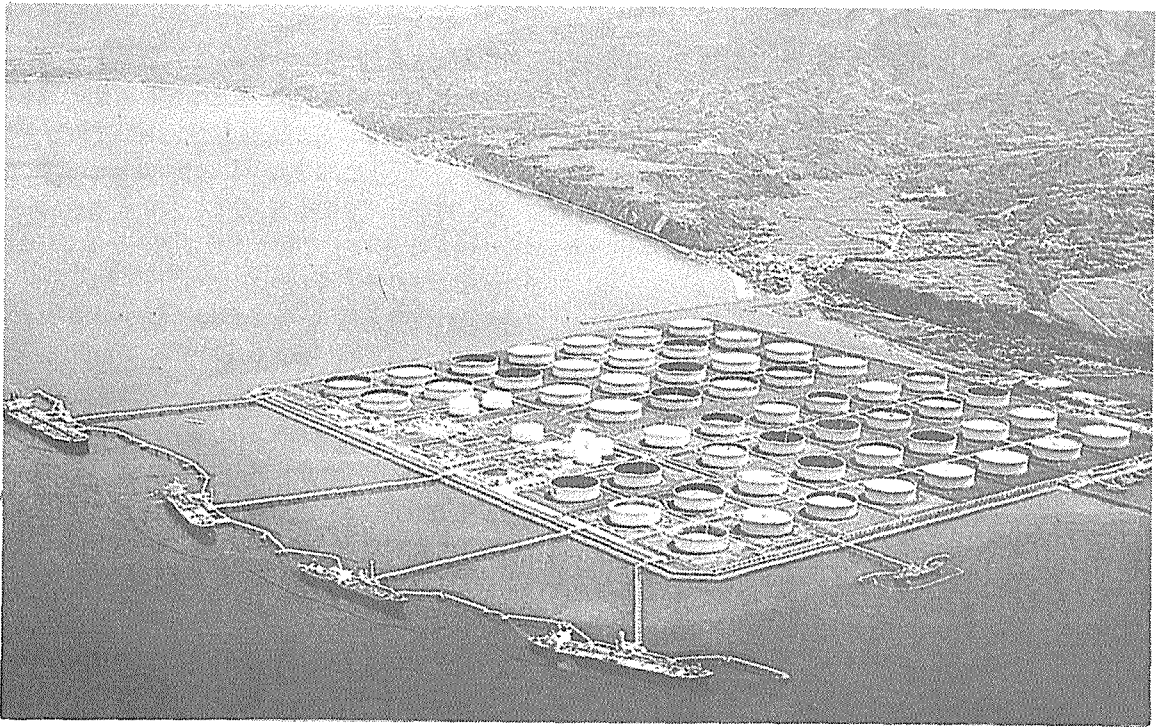
석유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지난 6월의 石油産業基本問題檢討委員會報告에서 다가올 1990년대 중반에 日本으로서 석유의 안정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의 構築을 도모하기 위해, 평상시에 석유산업의 생산·판매 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강인한 석유산업을 實現하도록 하고, 석유공급에 대하여 평상시에는 민간의 자율적 활동에 맡기고 국가는 그 역할을 석유비축의 확충, 긴급시 대응체제의 정비등 안정대책에 重點을 두어야 한다는 취지의 提言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비축정책에 대해서도 이러한 기본적인 방향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며, 비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국가비축에 중점을 두도록 하고, 민간비축에 대해서는 그 意義를 살리면서도 다대한 在庫負擔이 평상시 석유산업의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등을 감안하여 향후 輕減을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

(2) 備蓄의 효과적 활용

비축은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부담으로 保有되고 있는 日本의 귀중한 재산이고, 石油需給의 실태에 대응하여 적절하고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석유의 絶對供給量이 부족한 상황하에서는 수요의 公共性등에 따라 일정의 優先順位에 의해 공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또한 위기의 초기단계에 國際協調下에서 방출하는 경우에는 각국과 밀접하게 제휴할 필요가 있다. 또한 IEP協定에 근거한 緊急融通制



도가 발효되는 경우에도 국가로써 책임을 갖고 협정상의 권리를 행사,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다.

이와 같은 다양한 사태에 대하여 정확한 대응을 통하여 備蓄放出의 효과를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비축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관점에서도 석유비축은 기본적으로 국가비축이라는 형태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3) 國際動向에, 근거한 備蓄體制의 확립

정부의 규제가 직접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비축의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것은 지난 IEA閣僚理事會에서도 지적되었으며, 日本의 국가비축확대는 당연히 이러한 國際的 요청에도 부응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美國에서는 중전부터 모두 국가비축에 의해 석유 비축을 해 왔으며, 기타 주요석유소비국을 예로 들면 네덜란드, 西獨, 프랑스에서도 정부에 의한 管理가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는 公的인 비축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수정이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국제적 조류를 배경으로 IEP協定上的 緊急融通制度가 발동하는 사태이전의 단계로부터 각국간

의 政策協調에 비축의 방출을 하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日本으로서도 이러한 동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體制를 갖추어 줄 필요가 있다.

4. 효율적인 備蓄體制의 확립

석유비축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緊急時의 대책으로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중요한 施策이지만 그 實施에는 국가비축과 민간비축 모두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석유비축의 추진에는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그 범위내에서 최대의 效用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민경제적으로 보아 보다 효율적인 비축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가비축의 확충을 강력히 추구하는 한편, 이를 前提로 민간비축에 관해서는 꼭 필요한 水準에 대하여 조정함과 동시에 비축대상에 대해서도 필요한 者에 한하여 중점적으로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에서 비축에 의한 수급상의 효과, 혹은 産業에 대한 영향등 비축의 필요성을 국제적인 동향도 감안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축시설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비축을 實施한다는 관점에서 국가비축기지와 민간잉여탱크의 활용간의 적절한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Ⅲ. 향후의 石油備蓄정책방향

1. 국가비축과 민간비축

(1) 役割分組의 기본방향

석유비축으로서는 현재 日本이 국가비축 및 민간비축을 하고 있으며, 각각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우선 국가비축은 방출시에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가 가능하고, IEP協定상의 의무 혹은 국제협조에 의한 방출, 나아가서는 석유공급의 절대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요의 公共性등에 따라 일정의 優先順位에 의거 방출이 필요한 사태에 확실히 이를 실행할 수 있다.

한편 민간비축은 기업활동의 일환으로 방출하는 것이며, 국가비축과 비교하여 방출의 확실성보다는 기동적이고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 그 특색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긴급시의 초기단계등에 신속히 대처하거나, 긴급시에 민간기업이 原油를 조달할 때 原油거래교섭중에도 필요에 따라 탄력적인 방출을 하는 등의 대응에 적합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日本에서 비축을 방출해야 할 사태로서는 과거의 경험이나 국제석유수급동향을 토대로 하면, 기본적으로는 緊急融通制度의 발동이라는 IEP協定이 상정되는 사태(위기·IEP協定上 IEA가맹국전체 내지는 특정국의 석유공급이 7%이상 삭감되는 사태로 상정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적으로는 石油需給適正化法の 발동도 상정될 수 있다.)와 위기까지에는 이르지 않으나, 日本에 대한 석유공급이 상당량 부족한 사태, 또는 석유市況이 異常적으로 급등하는 사태등(準危機)으로 대별할 수 있을 것이다.

危機 즉 緊急融通制度가 발동되는 경우에는 協定上 IEA가맹국과의 협조하에 비축의 방출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발동시점에서 각국은 각각 90일분의 석유비축을 보유하는 것이 前提로 되어 있다.

한편 準危機時(Subcrisis)에 있어서는 危機로까지 발전된다는 것도 想定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日本으로서는 기본적으로 IEP協定상의 비축의무량(90일분)을 유지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日本獨自의으로

상황에 대응하여 관계국과도 협조하면서 탄력적으로 석유비축의 방출을 할 필요가 있다.

日本에 있어서 국가비축과 민간비축의 적절한 役割分組의 방향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이며, 국가비축의 확충을 향후의 기본적인 방향으로서 설정하면서, 上述한 바와 같은 비축을 방출해야 할 사태의 特性에 따라 그 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합한 形態로 비축을 보유한다는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석유비축은 危機時에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직접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형태로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며, 한편 準危機時에는 오히려 機動的이며 彈力的인 대응에 따라 대처하는 것이 요청되고 있고 오히려 민간비축의 활동이 민간의 자율적인 기업활동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2重備蓄體系를 지향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備蓄水準

① 국가비축의 수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危機에 대응한 비축은 국가의 직접적인 관리가 가능한 형태로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이를 위해 IEA의 備蓄義務日數인 90일상당분은 국가비축으로 보유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財政형편이 어려우나 소요자금을 확보하여 5,000만kl(301,500만 배럴)를 목표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5,000만kl의 목표는 석유공급이 不安定化할 것으로 판단되는 1990년대중반까지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② 민간비축의 수준

민간비축은 민간기업에 다대한 재고의 보유를 강제하는 것이며, 향후 市場메커니즘의 활용을 도모하는 것을 日本石油政策의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민간비축의무에 대해서는 輕減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민간비축은 既述한 바와 같이 準危機내지는 危機의 초기단계에 기동적이며 탄력적인 대응을 도모하는데에 필요불가결하다고 생각되며, 향후에도 계속 필요한 한도에서 비축의무를 이행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형적인 準危機였던 2차석유위기에 민간기업이 최대25일분의 비축을 방출했던 점을 감안하고, 이에 運用在庫(running stock, 45일분)를 더한 수준(70일분)을 민간비축의무량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경우 ①에서 설명한 국가비축의 진척상황을 보면서, 민간비축의무량을 현행 90일에서 단계적으로 70일까지 輕減하는 것이 타당하다.

2. 備蓄對象

日本에서는 지금까지 긴급시에 공급부족을 일으킬 가능성 및 그 공급부족이 국민생활에 미칠 영향등을 감안하여 1975년에 제정된 石油備蓄法하에서 휘발유, 나프타, 제트油, 등유, 경유, 重油등의 석유제품을 備蓄對象으로 하고, 同法에 근거하여 국내소비의 90일분(輸入製品에 대해서는 70일분)의 비축을 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 석유제품 가운데 石油化學原料用 나프타에 대해서는 석유화학제품이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상품이며, 石油化學産業에 대하여 국제경쟁조건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등을 배경으로 세계적으로는 IEP協定上 비축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외에, 현재 거의 모든 歐美諸國에서도 備蓄義務가 부과되고 있지 않다.

한편 日本의 석유화학원료 및 석유화학제품의 근년 공급상황을 살펴보면,

- 국내외에서 석유화학원료의 다양화가 진전되어, 나프타, 에탄, 重質NGL등 여러가지 원료간에 市場條件에 대응한 원활한 전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되고 있으며,

- 석유화학원료용 나프타의 供給源 자체에 대해서도 輸入나프타의 증가, 輸入先의 다각화등에 따라 다양화되고 있으며,

- 석유화학제품의 무역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基礎化學品과 중간제품단계에서의 수입도 이루어 지고 있어 원료와 석유화학제품조달의 多段階化가 진전되고 있는 등의 변화가 나타나고, 원료와 제품조달면에서의 안정성은 크게 향상되고 있다.

또한 석유화학제품의 국내공급구조는

- 원료, 基礎化學品, 중간제품, 석유화학제품, 加工製品등 많은 단계의 각각에 상당한 재고가 있으며, 이들은 긴급시에 방출이 가능하고,

- 또한 석유화학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中間 및 최종제품의 거의 모두에는 다양한 代替品이 있고 그들 代替品은 대량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며, 석유의 공급장애에 의한 최종소비자에 대한 영향의 가능성은 석유화학제품에 대해서는 대폭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日本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향후 효율적인 備蓄體制의 확립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석유화학용 나프타의 비축에 관계되는 국제적동향, 석유화학원료 및 석유화학제품의 공급안정성의 향상, 비축의무가 석유화학산업에 미치는 영향등을 감안한다면, 현재 석유화학원료용 나프타를 日本에서 비축대상으로 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제 비축의무를 철폐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프타의 비축의무철폐는 나프타비축에 관련된 석유 및 석유화학양업계간의 財政負擔을 둘러싼 종전부터의 經緯등을 고려하여 국가비축의 증감등 日本의 새로운 備蓄體制로의 移行과 병행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또한 석유공급에 障害가 발생하는 긴급사태에 있어서도 석유화학원료의 확보 및 석유화학제품의 안정공급에 대해서는 석유화학산업자체의 책임에 귀착되는 것이다. 석유화학산업에 있어서는 이러한 認識에 입각하여 만전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또한 정부에서도 석유화학제품의 안정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需給動向을 주시하는 등 필요한 대응을 수립하는 것이 요망된다. 이밖에 종전부터 긴밀한 거래관계에 있는 石油와 石油化學 兩業界는 공존공영의 관점에서 원활한 협력관계를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3. 備蓄施設

國家備蓄原油의 보관에 대해서는 장기에 걸쳐 안정적인 보관이 가능하고, 일단 緩急한 경우에는 정유공장에 대하여 확실하고 신속한 방출이 가능한 시설에서 할 필요가 있다.

종래 이러한 관점에서 3,000kl의 국가비축목표에 대응한 國家備蓄基地로서 전국 10개지역에 基地建設이 추진되어 왔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基地建設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계속 착실한 工事의 추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부의 基地에 대해서는 用地造成등의 지연등으로 계획에 비하여 工事가 지연되고 있으며, 이들 基地建設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건설을 한다는 관점에서 각基地의 실태에 근거하여 건설계획을 수정, 완공목표년도를 연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향후 日本의 石油備蓄體制는 국가비축을 중심으로 한 것이 되고, 狀況에 따

라는 국가비축의 조기방출도 고려될 수 있다는 점에서, 國家備蓄原油의 보관에 있어서는 종전보다도 더욱 신속한 방출을 고려한 體制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民間탱크에 대해서는 독립된 국가비축 기지와 비교하여 生産投入이 용이하고, 受取와 引出의 경험이 풍부하다는 등의 특색을 갖고 있으며, 國家備蓄原油의 보관에 있어서는 民間탱크의 활용에 대하여 적극적인 평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석유비축은 막대한 資産을 요하는 것이며, 보다 효율적인 비축의 실시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말할 여지가 없다. 현재 민간기업에는 석유수요의 대폭적인 減退로 잉여탱크가 발생하였으며, 게다가 민간비축의 輕減에 따라 새로 剩餘가 발생하여 資源의 유효이용을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이 잉여탱크의 활용을 도모하는 것이 국민경제적으로 봐서 타당하다.

따라서 향후 국가비축확대에 관계되는 비축시설에 대해서는 民間탱크의 차용으로 대처하도록 하고, 새로운 국가비축기지의 건설은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이 경우 민간탱크의 활용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정부에서는 탱크의 차용에 있어서 장기 차용이 가능하고 긴급시에 적절한 방출이 가능한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石油備蓄 방출의 기본방향

석유비축의 방출의 구체적 방향에 대해서는 「石油審議會 石油部會 緊急時對策 小委員會」에서 향후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문제는 비축정책의 기본에 관련된 문제이고, 當委員會에서도 향후 日本의 備蓄體制와 관련된 범위내에서 방출의 방향에 대해서도 심의를 하였다. 여기에서는 그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만 정리, 提言코자 한다.

(1) 基本方向

석유비축의 방출에 대해서는 석유의 안정공급을 유지하는데 「최후의 수단」이며, 기본적으로는 졸속한 대응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되지만, 공급중단이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市場의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에 안심감을 주기위해서도 오히려 어느 정도 졸속한 단계에서 방출을 해야 할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비축의 방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는 어느 정도 미리 밝히는 것이 국민이 혼란에 빠지지 않고 원활한 대응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석유가 국제적인 상품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방출에 있어서는 국제적 협조에도 충분히 배려하여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석유비축의 방출에 있어서도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가비축과 민간비축이 역할을 기준으로 할 때 準危機時에는 원칙적으로 민간비축을 방출하고, 危機時에는 원칙적으로 국가비축을 방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단 準危機時에 석유가격이 상승기조에 있고 국제적으로 국가비축의 조기방출이 요청되는 경우에는 민간비축과 국가비축의 合計水準을 감안하면서 국가비축을 조기에 방출할 수도 있다. 또한 즉각 危機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정도를 충분히 검토하면서 민간비축과 국가비축의 적절한 구성비에 따라 비축을 방출할 필요가 있다.

(2) 具體的 放出

① 民間비축의 방출

危機와 準危機時에 原油조달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한편 국제적 비판을 받고 있는 原油의 高價구매의 誘因을 주지 않는다는 배려가 필요하며, 이를 감안하면서 민간비축의 방출이 기동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환경조건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 各社마다의 原油調達力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비축의 무해제의 방법으로서 기본적으로 各社마다 개별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危機狀況여하에 따라서 특히 공급계약이 대폭적이고 長期化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전망되는 상황하에서는 지나치게 성급한 민간비축의 방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석유소비절약조치의 강화등 다른 조치와의 적절한 組合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② 國家비축의 방출

국가비축의 방출에 있어서는 備蓄本來의 기능으로서 과도의 需給逼迫, 原油의 高價買入등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방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당연 하지만, 저렴한 국가비축을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다는 기대 때

문에 石油會社 등의 原油調達노력이 減殺되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긴급시에 국가비축배분은 석유회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配分基準은 간명·공평하여 국민경제적으로 효과적인 방출을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요망되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上述한 제조조건을 감안하면서 석유회사에 대하여 상황에 따라 適當量씩 방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방출방법에 대해서는 방출방법의 양상이 市場에 미치는 영향, 기술적인 문제점등을 근거로 향후 그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요망된다.

또한 방출가격에 대해서는 原油調達노력의 감퇴방지, 高價매입방지, 국내가격의 양등방지등 諸要請을 토대로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市場實勢를 최대한 감안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 우리의 전통의식 □

젓상차리는 법

1. 제사(祭祀)의 종류

- 기제(忌祭) : 사망한 날 집안에서 지내는 제사
- 시제(時祭) : 봄이나 가을에 묘에서 지내는 제사
- 다례(茶禮) : 설날과 추석 등 명절에 지내는 제사

2. 지방(紙榜) 쓰는 법

현(顯)이란 별세하신 분을 높이는 뜻이고, 학생(學生)은 관직이 없는 사람일 경우에 쓰며, 관직이 있으면 관직 이름을 쓴다. 아버지는 고(考), 어머니는 비(妣), 할아버지는 조고(祖考), 할머니는 조비(祖妣), 남편은 벽(辟), 아내는 실(室) 이라고 쓴다. 아랫사람에게는 '현' 자 대신에 '망(亡)' 자를 쓴다. 양위를 모실 때에는 남자가 좌측, 여자가 우측이다.

3. 진설(陳設)

젓상에 음식을 갖추어 놓은 것을 말하는데, 지방, 가문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편적으로 옛부터 내려오는 격식을 보면,

● 제 1 열 : 신위 바로 앞의 열을 말하고 주식으로 메(飯, 밥)가 좌측, 갱(국)이 우측이다. 좌우라 할 때는 언제나 정면을 향한 방향지칭이며, 좌측이 상위이다. 잔의 위치는 신위의 정면이다.

● 제 2 열 : 술안주인 전(前, 구운것)과 적(炙, 기름에 지진것)이 위치한다. 어동육서(魚東肉西)라 하여 육이 상위이므로 좌편에, 어를 우편에 놓고, 두동미서(頭東尾西)라 하여 머리가 동쪽으로 향하게 놓는다.

● 제 3 열 : 탕(湯)을 놓는데 보통 육탕, 어탕, 소탕(素湯)의 3탕을 쓴다.

● 제 4 열 : 반찬인 김치, 나뭇 등을 놓는다. 좌포우혜(在脯右醞)라 하여 왼쪽에 포, 오른쪽에 식혜를 놓고, 포와 식혜 사이에 침채(김치), 숙채(삼색나물-콩나물, 숙주나물, 무우나물), 청장(간장) 등을 놓는다.

● 제 5 열 : 후식인 과일을 좌측, 과자종류를 우측에 놓는다. 과일은 조율이시(棗栗梨柿)라 하여 대추, 밤, 감을 좌우부터 놓으며, 홍동백서(紅東白西)라는 말도 있다. 과자류는 다식, 산자, 강정등을 썼으며, 홀수로 놓는다.

(진설도)

